



# 차이나

CHINA Market Report

## 마켓 리포트



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

전화 : 86-10-6505-2672/3

이메일 : beijingk@kita.net

### <중국 반간첩법> 개정 내용

#### 목차

1. <중국 반간첩법> 개정 개요
2. <중국 반간첩법> 주요 개정 내용
3. 시사점

#### 요약

- 중국 안보법률 체계의 주요 부분인 <중국 반간첩법>이 개정되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
- 개정된 <중국 반간첩법>은 간첩행위 확대, 예방체계 신설, 행정절차 및 처벌내용 구체화, 국가안전기관 내부감독과 처벌 당사자 권리 등을 새롭게 명시
- ‘국가안보 및 이익 관련 데이터, 물품의 정탐, 매수 등’ 간첩행위 적용범위 확대로 잠재적인 위험이 커진 만큼 정보 데이터 관리 등에 대한 주의 필요
- 국가안보 및 민감영역 정보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적법 시스템을 마련하고 데이터 처리 및 관리를 점검하고 직원 교육 등 실시

# 1. 중국 반간첩법 개정 개요

-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금년 4월 26일 <중국 반간첩법> 개정안을 통과,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
- <중국 반간첩법>은 1993년 <국가 안보법>으로 최초 제정, 2014년 <반간첩법>으로 개정된 이후 재개정
- 중국 안보법률 체계의 일환으로서 중국의 안보 강화에 대한 중요성과 방향성을 제시

## 중국 반간첩법 개정

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보법 (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)	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(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)	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개정 (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)
1993. 2.22 공포·시행	2014. 11. 1 공포·시행	2023. 4. 26 공포 2023. 7. 1 시행
총 5장 34개 조항	총 5장 40개 조항	총 6장 71개 조항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제1장 : 총칙 (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 규정)</li> <li>▶ 제2장 : 국가안보 기관의 기능과 권한</li> <li>▶ 제3장 :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국민과 단체의 의무와 권리</li> <li>▶ 제4장 : 법적 책임 (외국의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경우 범죄에 해당하여 형사책임을 진다는 내용)</li> <li>▶ 제5장 : 부칙 (공안의 국가안보 업무수행 시 동 법률을 준수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제1장 : 총칙</li> <li>▶ 제2장 : 국가안보 기관의 기능과 권한</li> <li>▶ 제3장 : 국민과 단체의 의무와 권리</li> <li>▶ 제4장 : 법적 책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각종 정보의 불법소지가 범죄여건에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, 국가보안기관은 15일 이하의 행정구금을 발령하거나 행정구류할 수 있음 추가</li> <li>*간첩활동에 연루된 압수동결자산의 회수 및 형사책임 추가, 자산동결에 대한 세부규정 추가</li> <li>*강제조치 불만 시 기존 15일 이내 불복심의를 60일 이내로 늘림</li> </ul> </li> <li>▶ 제5장 : 부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기타간첩활동의 종류 추가명시</li> <li>*동법 시행에 따라 기존&lt;국가안보법&gt; 실효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제1장 : 총칙 (국가안보 기관에 대한 내용 포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간첩행위 범위 확대</li> </ul> </li> <li>▶ 제2장 : 안전 대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국민의 방법의식 교육내용 추가</li> <li>*방첩안전방법 중점단위 관리제도 추가</li> </ul> </li> <li>▶ 제3장 : 조사 및 처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소환조사 시 구체적인 절차 추가 명시</li> <li>*출입국 불허에 대한 내용 추가명시</li> </ul> </li> <li>▶ 제4장 : 보장 및 감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방법업무분야 과학기술의 중요성 언급</li> </ul> </li> <li>▶ 제5장 : 법적 책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간첩행위가 범죄여건에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능한 처분조치 추가명시</li> <li>*데이터의 생산·판매 내용 추가</li> </ul> </li> <li>▶ 제6장 : 부칙</li> </ul>
법령원문 : 중국인민대표대회 <a href="http://www.npc.gov.cn/zgrdw/npc/lfzt/rl/ys/2014-08/31/content_1876762.htm">http://www.npc.gov.cn/zgrdw/npc/lfzt/rl/ys/2014-08/31/content_1876762.htm</a>	법령원문 : 중국정부망 <a href="https://www.gov.cn/zhengce/2014-11/01/content_2775484.htm">https://www.gov.cn/zhengce/2014-11/01/content_2775484.htm</a>	법령원문 :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<a href="https://www.gov.cn/yaowen/2023-04/27/content_5753385.htm">https://www.gov.cn/yaowen/2023-04/27/content_5753385.htm</a>

## 2. 중국 반간첩법 주요 개정 내용

### ① 법안 구성

#### ■ 기존 5장 40개 조항에서 6장 71개 조항으로 확대

- 제1장 총칙, 제2장 안전 대비, 제3장 조사 및 처분, 제4장 보장 및 감독, 제5장 법적 책임, 제6장 부칙으로 구성

### ② 간첩행위 범위 확대

#### ■ 간첩행위를 6개로 명시, 기존 대비 적발 대상 확대 (4조)

- 국내외 조직, 개인 등이 간첩 조직 등과 결탁하여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행위
- 간첩 조직과 대리인에게 의탁하는 행위 (신규 추가)
- 기타 국가안전과 이익에 관계되는 문건, 데이터, 자료, 물품의 절취, 정탐, 매수, 불법제공 (신규 추가)
- 국가기관·기밀기관·핵심 인프라 시설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·침입·방해·통제·파괴 등 (신규 추가)
- 적에게 공격 목표를 지시한 경우
- 제3국을 겨냥한 간첩활동으로 중국의 안전을 해치는 경우 (신규 추가)

### ③ 간첩행위 조사절차 구체화 및 협조 의무 규정

#### ■ 간첩행위 혐의자에 대한 조사절차를 기존에 비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환 절차 등을 신규로 규정, 관련 기관의 협조 의무 부과

- 중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신분증명 요청 외에 신원이 불분명하고 간첩혐의가 있는 경우 소지품 확인도 가능 (24조)
- 문건, 데이터, 자료, 물품을 열람, 조사할 수 있으며, 간첩행위 혐의자의 재산정보도 조회 가능 (26조, 29조)

- 현행법에 대한 구두 소환 가능, 소환 원인과 근거를 피소환인에게 고지하고, 소환 기피자에 대해서는 강제 소환 가능 (27조)
- 물류기관,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등은 간첩행위 조사에 협조 의무 (58조), 데이터 조사에 비협조시 <데이터안전법>에 따라 처벌 (59조)

#### 4 간첩행위 처벌 유형 확대

##### ■ 간첩행위를 했으나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구류 및 벌금 등 부과 가능, 영업 중지, 등기 취소 등 행정조치 추가

- 법 위반 혹은 아래의 행위시 형사책임 추궁,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구류 및 벌금 부과 가능 (60조)
  - ①방첩행위 관련 국가기밀 누설, ②타인의 간첩범죄 행위를 알면서도 국가 안전기관 협조 거부, ③국가안전기관의 임무수행 고의 방해, ④국가안전기관이 봉인, 압류한 재물 은닉, 이전, 매각, ⑤간첩행위 연루된 재물 은닉, 이전, ⑥국가안전기관에 협조한 개인, 조직에 대한 보복
- 개인이 간첩행위를 했으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구류, 과태료 등 부과 가능, 개인 및 조직의 위법 정황 및 결과에 근거하여 서비스 제공 또는 생산 및 영업 중지, 관련 증서 말소, 등기 취소 등 행정처리 가능(54조)
- 간첩행위 혐의자 출국 불허, 국가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불허, 외국인의 법 위반으로 추방시 10년내 입국 불허(33조, 34조, 66조)

#### 5 국가안전 교육 및 예방 강화

##### ■ 제2장에 국가안전 예방 내용을 신규로 추가하여 국가기관, 기업 등의 교육, 예방 의무 명시

- 기업조직 등은 반간첩 안전 예방을 책임지고 직원에게 국가안전 수호 교육 등을 진행 (12조)
- 국가는 방첩안전중점기관 관리제도를 수립하여 방첩안전 교육, 비밀정보 안전 예방 등 관리 (17, 18조)

## ● 국가안전기관의 내부감독과 행정처벌 당사자 권리 강화

### ■ 국가안전기관 직원의 법률 준수 여부 감독, 행정처벌 당사자 청문회 요구 권리 고지 등 신규 추가

- 국가안전기관 직원의 법률 준수 등 내부감독을 엄격히 집행(51조)
- 개인 등은 국가안전기관 및 직원의 직권남용 및 기타 위법행위에 대하여 검찰기관 등 관련 부서에 고발, 고소할 권리 보유 (52조)
- 국가안전기관은 행정처벌 결정 전에 처벌 당사자에게 처벌내용 및 근거, 당사자의 진술, 변론, 청문회 요구 등의 권리 고지 의무 신규로 추가 (67조)

## 3. 시사점

### ■ 개정된 법률은 간첩행위 범위 확대, 예방체계 신설, 행정절차 및 처벌내용 구체화 외에 국가안전기관에 대한 내부감독과 처벌 당사자에 대한 권리도 신규로 명시

- 사이버 공격, 제3국 겨냥 활동 등 간첩행위 확대, 안전 교육 및 예방 내용 신규 추가, 영업정지, 등기 취소 등 행정처벌 확대
- 국가안전기관 직원의 법률 준수에 대한 내부감독, 협의 당사자의 변론, 청문회 요구 등의 권리 고지 조항이 새롭게 추가

### ■ 간첩행위의 정의와 적용범위가 확대로 인한 잠재 위험 대비 필요

- 새롭게 추가된 간첩행위 중 ‘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문서, 데이터, 자료, 물품’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개인 및 기업들의 주의 필요
- 동 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자료 혹은 데이터 관리 체계 등에 대해서 법률 검토 등을 통해 사전에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 조치 시행

### ■ 정보, 데이터의 처리 및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

- 국가안보 및 민감영역 정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적법 시스템을 마련하여 데이터 처리 및 관리에 주의하고 직원 교육 등 실시
- 민감분야의 고객사와 거래시 상대방이 제공한 데이터나 자료가 동 법에 위배되는 지 여부 등에 대한 사전 확인 (필요시 거래당사자에게 확인서 요청)